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 (교육조직) ①~③ 생략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⑦ 생략 ⑧ 신설	제6조 (교육조직) ①~⑦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의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⑧항 신설
제54조 (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4조 (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4조 [별표 2] 개정
부칙 ①~② 생략	부칙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제54장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융합학부의 전공과 학위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학칙 부칙 개정

개정전 「학위명」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동양어문화전공	문학사
	글로벌한국학과	문학사	항공관광전공	관광경영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동물자원과학과	이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바이오융합공학과	공학사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경영공학사	차능형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지능정보공학전공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건축학과 (4년제)	공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4년제	약학사	약학과 6년제	약학사

개정후 「학위명」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동양어문화전공	문학사
	글로벌한국학과	문학사	항공관광전공	관광경영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동물자원과학과	이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바이오융합공학과	공학사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경영공학사	인공지능공학전공	공학사
	지능형반도체공학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건축학과 (4년제)	공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4년제	약학사	약학과 6년제	약학사

1)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u>제60조의2 신설</u>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u>제60조의2 (학점 포기)</u> ①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신설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2.23., 2009.11.23., 2014.12.23., 2017.2.27., 2021.1.22.] ②~③ 생략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 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⑦ 생략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개정: 2006.2.14.] 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40학점, 건축학과 5년제는 160학점, 약학과 4년제는 165학점, 약학과 6년제는 2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8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2.23., 2009.11.23., 2014.12.23., 2017.2.27., 2021.1.22.]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⑤ 졸업학년의 첫 학기(7학기, 단, 5년제는 9학기, 6년제는 11학기) 등록 전에 그간 이수한 학점을 반드시 점검하여 졸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조 ①항, ④항 ⑤항 수정
제4조 (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① 생략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③~⑤ 생략	제4조 (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③~⑤ 현행과 같음	제4조 ②항 수정
부칙 ①~③ 생략	부칙 ④ (경과조치) 이 세칙 제7장 졸업요건 제1조와 제4조는 <u>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u>	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